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1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4. 21

다. 상 정 일 자 : 2006. 5. 1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가. 제안사유

2006. 1. 11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 입법예고 : 2006. 3. 27 ~ 4. 1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 금번에 지방자치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으로서 이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